#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6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 강훈식 · 신동근 · 기동민

김윤덕 · 김병기 · 유동수

송갑석 · 김진표 · 김영호

이용빈 · 장경태 · 정춘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 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 음.

한편,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 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
	애학생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인 교육전문가
	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